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3
----------	-----

제출일자 : 2006. 6. 5

제출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사유

우리구에서 입안하는 행정상 입법안을 입법예고토록 하고, 입법예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문을 함께 예고토록하여 주민들이 입법안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폭 넓은 의견제출 및 입법과정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입법예고의 대상을 종전에는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만 입법예고하던 것을 원칙적으로 모든 자치법규에 대해 입법예고하고, 예고 후 중요내용의 변경이나 추가시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함(안 제3조).
- 나. 입법예고시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 제·개정문의 전문을 입법예고토록 함(안 제4조제1항).
- 다. 입법예고문을 구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한 것을 구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행정절차법」 제41조, 「법제업무운영규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입법예고 : 2006. 5. 25 ~ 6. 1(7일간) ▷ 제출의견 없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3조 (입법예고) ①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한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관련 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입법예고문에는 자치법규의 제명·입법취지·주요내용·의견제출방법 등을 명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 한다)을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함께 게재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중 “내고장사하” 를 “구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로, “방송, 컴퓨터통신등” 을 “ 방송,” 으로 한다.

제9조중 “제3조제1항 각호 1의 입법예고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자치법규안에 있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법예고를 실시하거나 당해” 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 (입법예고대상) ①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관련 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예고하여야 한다.</p> <p>1. 지방세 2. 보건위생 3. 환경보전 4. 도시계획 5. 건축 6. 도로교통 7. 상·하수도 8. 농지 기타 토지제도 9. 정보화관련 제도 10. 기타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p> <p>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p> <p>1. 삭제<2000.9.30> 2.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가 곤란한 경우 3.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삭제<2000.9.30></p>	<p>제3조 (입법예고)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p> <p>1.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p>

현 행	개 정 안
<p>제9조 (예고사항의 확장) 구청장은 제3조제1항 각호 1의 입법예고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자치 법규안에 있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법예고를 실시하거나 당해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타의 자에 대하여 입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통지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p>	<p>제9조 (예고사항의 확장)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 ----- ----- -----</p>